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3. 기타 잠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계좌를 설치한다.

②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 하거나 금채 또는 정부보증채권을 배당하여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재해에 관련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망, 실종자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
 2. 생계구호
 3. 식품, 의류, 침구 등 생활필수품의 급여
 4. 비축물자의 구입
 5. 주택구호(응급 주택수리등)
 6. 의연물품의 조작 경비
 7. 기타 재해구호사업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의비용
- ②구호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회계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본일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보사한경국장, 기금본일운용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복지계장으로 한다.

제 6조 (회계관리)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 7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 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